#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통합 지휘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체제로 전환(안 제3조)

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요건의 명확화(안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설치
-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요건과 운영시기 명문화

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안 제5조)

- 재난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 구성 운영

라.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지정(안 제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장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안 제8조 ~ 안 제21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재난현장상황통보), 주민대피
- 재난현장 출동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 출동지원
- 통합지휘소의 위치, 재난현장 상황 파악·통보,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통제, 응급의료 활동 지원
- 기반시설 우선복구, 긴급 인력·장비 지원요청,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등

바.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면 복구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재배치(안 제22조)

사.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 철수(안 제23조)

4.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2)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표준조례

나. 참고사항

1) 예산조치 : 별도조치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4) 입법예고(2014. 4. 24 ~ 5. 13) : 의견 없음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 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군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 본 조례는 총 4장 24조 및 부칙으로서 재난현장 대응단계,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요건과 구성 및 임무, 현장지휘관 지정,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긴급복구와 복구체계 전환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재난 발생시 본 조례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